

## 국무조정실 · 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5년 2월 26일  
국무조정실장

### 1. 선발예정인원(1개 직위, 총 1명)

채용구분	인원	주요담당업무	근무예정부서
기간제근로자	1명	○ 온라인 홍보 업무 지원 - SNS 채널 운영 및 관리, SNS홍보 기획 지원 - 국정·정책관련 콘텐츠 제작 - 그 밖에 온라인 홍보 업무 지원	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(세종특별자치시)

### 2. 근무조건

- 계약기간 : 채용일('25.4.3 예정)로부터 1년
- 보 수 :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내부 운영지침에 따름
  - 2025년 국무조정실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및 수당
    - ※ (기본급) 월 230만원 내외
    - ※ (수당) 초과근무수당, 연가보상비 등
    - ※ (보험) 4대 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의무가입
      - \*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
- 근무지 : 세종특별자치시 ※업무 특성상 서울 출장 가능(출장비 지원)
-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
  - ※ 업무 특성상 기재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, 휴일근무 가능(수당 별도 지급)

### 3.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

#### ① 응시자격요건 [최종시험(면접시험) 예정일 기준]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

##### 【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】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  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  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  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  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7. 12. 31. 이전 출생한 자)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, 최종시험예정일(면접일) 기준 6개월 이내 전역(소집해제) 예정자 포함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  - \* 복수국적자(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)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
## ② 우대요건 [원서접수 마감일 기준]

### 우대요건(해당자에 한함)

-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SNS 채널 운영 관련 근무 경력자(연차별 차등 우대)
  - '경력'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,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해 인정. 단,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가능
    - ※ 경력증명서에 **근무기간(연월일)·전임여부·담당업무가 반드시 명시**되어 있어야 하며, 해당 내용이 누락되는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경력 불인정
    - ※ 근무했던 기관이 폐업한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,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\* 중 1종, ③ 소득금액증명서, ④ 관련분야 근무 경력 증빙 서류\*\* 제출 필수(①,②,③,④ 모두 제출)
      - \*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
      - \*\* 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 내역 등
  - 정규직 또는 전임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,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
    - ※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
  -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,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함
- 관련 학과(대학(2년제 포함) 또는 고등학교) 졸업자(학위등급별 차등우대)
  - ※ [관련학과] 광고홍보학과, 미디어콘텐츠학과, 미디어학과,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, SNS마케팅학과, 언론정보학과, 국문학과, 문예창작과 등 유사 관련 학과

## 4. 시험방법

### ①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  - ※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, 우대요건 참고
- 단, 응시인원이 지원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한 경우,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
  - ※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,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

② 2차시험 : 면접전형

※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
※ 면접전형 당일, 개별면접 前 역량평가 실시(SNS 정책홍보 게시물 작성 등 평가)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※ (평정요소)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직무 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

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'하'로 평정하거나,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'하'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,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'상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

※ "상"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"중"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

## 5. 채용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모집공고	'25.2.26(수)~'25.3.7(금)	■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, 인사혁신처 나라일터
원서접수	'25.2.26(수)~'25.3.7(금)	■ 국무총리비서실 뉴미디어총괄과 채용담당자 (전자우편접수, riswell@korea.kr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5.3.13(목)	■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면접심사	'25.3.19(수)	■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
최종합격자 발표	'25.3.26(수)	■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
## 6. 원서접수

○ 접수기간 : '25. 2. 26.(수) ~ '25. 3. 7.(금) 18:00

○ 접수방법 : 관련 서류는 e-mail로만 접수(확인메일 개별발송예정)

- e-mail: riswell@korea.kr

※ e-mail 제목은 반드시 "성명(홍보)"로 기재

\* 예시: 홍길동(홍보)

※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(25.3.7.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## 7. 제출서류

※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

※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

서류	비고
<b>I. 공통사항(필수제출서류)</b>	
1. 응시원서 1부 (별지 1호 서식)	·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,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
2. 자기소개서 1부 (별지 2호 서식)	· A4 2매 이내로 작성(형식·구성 자유)
3.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 (별지 4호 서식)	· 자필 서명 필수
4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(별지 5호 서식)	· 자필 서명 필수
<b>II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함)</b>	
5. 경력(재직)증명서 1부 (별지 3호 서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</li> <li>· 근무기간(연·월·일)·직위(급)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,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</li> <li>·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(담당업무 미기재 등)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,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</li> <li>※ 근무했던 기관이 폐업한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,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* 중 1종, ③ 소득금액증명서, ④ 관련분야 근무 경력 증빙 서류** 제출 필수(①,②,③,④ 모두 제출)</li> <li>*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</li> <li>** 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 내역 등</li> <li>·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(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)</li> <li>·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</li> <li>※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,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를 첨부하여야 함</li> </ul>
6. 학위(졸업)증명서 사본 1부	· 심사위원 제척·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,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공개되지 않음
7. 주민등록초본 1부	· 남성 지원자만 제출(병역 확인용)

## 8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,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근로계약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뉴미디어총괄과(☎044-200-273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